정　　관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D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CO., LTD. (약호 HDKSOE)라 표기 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소유, 관리 및 관련업
2. 경영관리 및 기술용역 사업
3.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4. 자회사 등의 위탁업무 지원 사업
5. 자회사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서비스업
6. 브랜드, 라이센스 등의 대여 및 제공 업무
7.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브랜드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판매, 임대 및 용역사업
8.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9. 기술 연구 및 연구용역사업
10.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운용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11.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12. 선박부품 및 철구제품 제조판매
13. 선박철공에 관한 조사 감정
14.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관련 무역업
15.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16. 부동산업(개발, 매매, 임대, 공급 및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관리 및 용역)
17.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여행알선업 제외)
18. 레저 스포츠 시설 운영업
19. 근린 생활시설(식당 및 다방, 이 · 미용업) 운영업
20. 유기장 및 공연장 운영업
21. 복지시설(독서실, 탁아소) 운영업
22. 기계공업(내연기관 및 터빈, 축수, 운동전달장치, 밸브 및 관이음쇠, 금형, 주 · 단조품, 펌프 및 전동기, 제지펄프, 지공기계, 운반하역기계, 금속공작기계,제조 및 판매)
23. 기업 임직원에 대한 교육 서비스업
24.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선박용 기관, 선미관, 축, 프로펠라, 닻, 타, 전기기기의 전장품 제조, 판매, 설치, 수리 및 A/S, 엔진부품의 판매, 설치 및 A/S)
25. 전기기기 기술개발 연구사업
26. 기계설비의 설치와 훈련용역
27.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관련 현장 엔지니어링
28. 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29. 산업분야 계획사업의 운영관리
30. 부품의 생산 및 재생
3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2. 엔지니어링 활동 및 사업
33. 컨설팅사업(기술전문)
34. 인재파견업
35. 유도비행체 및 발사체 설계, 제조업
36. 시스템 통합사업(소프트웨어개발, 공급, 통합자동화시스템분석, 개발,설계 및 설치)
37. 경기장 운영업
38. 에너지 절약 사업

39. 해양구조물 설치 및 해양설치장비 임대업

40. 정보화사업

41. <삭제>

42. 고철판매업

43. 전기안전관리 전문업

44. 신·재생에너지의 수입, 개발, 제조, 중개, 매매 및 공급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건설 및 임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45. 인터넷 통신판매업

46. 나무병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47. 국내외 농업, 축산업 등 식량자원 연구, 개발 및 관련 부대사업

48. 해상운송업

49.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50.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51. <삭제>

52. 정기 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 관리업

53. <삭제>

54.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업

55. 교육서비스업

56. 디지털 엔지니어링·매뉴팩처링 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

57.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당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② 당 회사는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d-kso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육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삭 제>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2 (배당우선 전환주식 : 1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에 배당율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⑥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제9조 제4항, 제48조의2, 제4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이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 3 (배당우선 전환주식 : 2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종 종류주식과 합산하여 이천만주로 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2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 4 (배당우선 상환주식: 3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② 3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8조의 2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3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3종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3-1종 종류주식")이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3-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3-1종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제8조의 5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 4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4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② 4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하며, 4종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의 조건 및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우선배당금은 회사와 4종 종류주식의 주주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우선배당금의 감액조정이 있거나 우선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4종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③ 4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제9조 제4항, 제48조의2, 제4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4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4년 6개월이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 "최초상환기일")까지로 한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 등 그 사유를 불문하고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와 4종 종류주식의 주주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상환청구기간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최대 10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될 수 있다.

(2) 4종 종류주식의 주주는 상환청구기간 동안 4종 종류주식을 상환해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3) 상환금액은 발행가격과 그에 대해서 상환일(단, 제1호 단서 2문에 따라 상환청구기간이 연기된 경우는 최초 상환기일)까지 우선배당금액의 합계액(단, 해당 상환일까지의 실제 지급 혹은 제2항에 따른 감액으로 지급간주된 배당금 합계액을 제외함)으로 한다.

⑤ 4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4종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까지(이하 "존속기간")로 하고, 존속기간 경과시까지 4종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단, (가)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 등 그 사유를 불문하고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혹은 (나) 상환청구기간 연장시 같은 기간까지, 각 존속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4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하되, 별지 2의 전환가액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의 익일부터,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까지로 한다. 단, 상환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같은 기간까지 전환기간이 연장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어느 경우에도 전환의 결과, 4종 종류주식의 주주가 개별적으로 의결권 기준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은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⑦ 4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하되, 별지 2의 전환가액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제4호의 조건이 충족됨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일 익일부터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하며, 존속기간의 연장시 해당 기간을 포함함)까지로 한다. 단, 상환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같은 기간까지 전환기간이 연장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제2항의 기간 동안의 보통주식의 종가가 4종 종류주식의 최초 전환가액(단, 희석화 조정이 된 경우 그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을 의미함)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그로부터 5일 내에 상법 제346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하는 방법으로 4종 종류주식 발행 당시 주식수의 50%에 해당하는 4종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⑤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회사의 임 · 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 ·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 · 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동등배당)

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3조의 2 (전자주주명부)

당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4조 (기준일)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2,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0억원은 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2,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0억원은 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 2 (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의 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의 4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제 14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의 인접지, 기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지역에서 소집한다.

④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⑤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17조의 2 (소수주주의 존중)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단독주주권 및 소수주주권을 존중한다.

제18조 (소집 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를 의장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의장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의장으로 한다.

제20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6조 (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당 회사의 이사회는 독립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독립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 중 제26조에 의한 독립이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로 하여야 하며, 제42조의3에 의한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28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하며, 선임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는 재선될 수 있다.

제29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제30조 (이사의 책임)

이사가 당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이사의 해임과 결원)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② 이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할 때

(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3)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시

(4) 사망시

제32조 (대표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1명 이상 선임한다.

제33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34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감사의 직무)

<삭 제>

제36조 (감사의 감사록)

<삭 제>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8조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후 첫 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②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③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하며, 의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의사의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2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 내 위원회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42조의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42조의 3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당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조의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⑦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의 4 (감사위원회의 직무등)

① 감사위원회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 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42조의 5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의 6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3조 (경영진)

①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고문 등)

①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독립이사의 자격)

독립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독립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4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당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47조(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8조의 2 (준비금의 자본전입)

당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본전입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49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 14조에서 정한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당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당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49조의 2 (분기배당)

① 당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제14조에서 정한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삭 제>

제49조의 3 (주식의 소각)

<삭 제>

제50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정관의 개정)

당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한다.

제2조 (세칙과 내규)

당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973년	12월	28일	제정
1974년	1월	3일	개정
〃 년	1월	4일	〃
〃 년	1월	5일	〃
〃 년	1월	9일	〃
〃 년	1월	10일	〃
〃 년	1월	15일	〃
〃 년	2월	22일	〃
1978년	9월	27일	〃
〃 년	12월	14일	〃
1980년	3월	11일	〃
〃 년	3월	18일	〃
1981년	8월	31일	〃
〃 년	10월	12일	〃
1982년	7월	3일	〃
〃 년	12월	4일	〃
1983년	6월	29일	〃

1984년	9월	1일	〃
1984년	10월	4일	〃
1987년	8월	1일	〃
1988년	3월	26일	〃
1989년	12월	22일	〃
1991년	11월	26일	〃
〃 년	11월	30일	〃
1992년	6월	1일	〃
〃 년	6월	3일	〃
1992년	6월	20일	〃
1993년	3월	11일	〃
〃 년	9월	24일	〃
〃 년	10월	28일	〃
〃 년	12월	29일	〃
1995년	3월	16일	〃
1996년	3월	15일	〃
1997년	3월	24일	〃
1998년	3월	27일	〃
1998년	3월	20일	〃
2000년	3월	24일	〃
2001년	3월	16일	〃
2002년	3월	15일	〃
2003년	3월	14일	〃
2004년	3월	19일	〃
2005년	3월	18일	〃
2006년	3월	17일	〃
2007년	3월	16일	〃
2008년	3월	14일	〃
2009년	3월	13일	〃
2010년	3월	12일	〃
2011년	3월	11일	〃
2012년	3월	16일	〃
2016년	3월	25일	〃
2018년	3월	29일	〃
2019년	3월	26일	〃
2019년	5월	31일	〃

2021년	3월	24일	〃
2023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9일	〃
2026년	3월	31일	〃

제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및 제23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서 기존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한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집중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 3 제8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별지)

별지1 및 별지 2도 정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별지 1>

우선배당의 조건 및 내용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은 제외) 매 회계연도마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4종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을 하여야 하고, 4종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음. 4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회계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을 다음 회계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함.

상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계산되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다음 산식에 따른 4종 종류주식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지급함(단,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으며, 그에 따라 주당 배당액이 증가함):

- 주당 배당금 = 주당 발행가격 x 우선배당률

각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기산일은 정관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4종 주주와의 약정에 따라 우선배당금이 감액되어 우선배당률이 0이 된 경우에는 위 우선배당에 따른 보통주에 대한 배당제한은 해제됨.

<별지 2>

전환가액 조정산식

최초 전환가액은 4종 종류주식의 발행가격으로 함. 즉, 전환비율은 1:1로 하되, 다음과 같이 조정됨. 수개의 전환사유가 있는 경우 누적적으로 조정됨. 전환가격 조정의 결과 전환가격의 증액되면 회사는 필요한 경우 상법상 요구되는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함.

(가) 희석화 조정

(1) 회사의 분할,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또는 자본의 감소(이하 "합병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합병 등의 직전에 4종 종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전환 간주된 보통주식에 분배되었을 수량의 회사(또는 합병 등에 있어서의 승계회사, 모회사 등)의 주식, 기타 재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은 조정되며, 회사는 그러한 합병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합병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2) 4종 종류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에는, 4종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상응하여 조정되고,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전환하지 아니하고 행사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됨.

(3) 기존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회사가 유·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하거나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같은 방식으로 조정.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 "신발행주식수"는, 실제 발행되는 주식수, 또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사채권자 또는 신주인수권자에게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의미하고, (iii)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의미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나) • 가치조정: 전환가격은 아래 조정금액의 발생시 아래 산식에 따라 조정됨

조정된 전환가격 = A * B / (A − X)

X = (대우조선 사유 조정금액 − 감액조정된 우선배당금액 (최대 625억원) − 상환기일부터 전환권 행사시점까지 경과연수에 250억을 곱한 금액) − 회사 사유 조정금액.

A = 4종 종류주식 발행가액 총액 1,250,000,051,328원

B = 4종 종류주식 주당 발행가액 137,088원. 단, 위 (가)의 희석화 조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을 의미함.